

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43 |
|----------|------|

2018년 4월 9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
- 나. 제안일 : 2018년 3월 20일
- 다. 회부일 : 2018년 3월 26일
- 라. 상정일 : 제28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2018년 4월 9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평생교육국장 주용태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8년 상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
-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), 2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 평가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,

-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 :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

2)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 기본법」제18조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0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
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) 위탁 사무 내용

-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
- 인터넷중독 상담·치료사업
- 인터넷중독 예방·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

-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
-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·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4)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
- 시설규모 : 234m²
- 주요시설 : 개인·집단 상담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- 위치도



5) 민간위탁기간 : 2년(2018.7.1~2020.6.30.)

6)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사단법인 흥사단)

7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604백만원(2018년)
- 산출근거
 - 인건비 356백만원, 물건비 46백만원, 경상이전 65백만원, 사업비 137백만원

8)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(이하 '광진아이월센터')는 청소년의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, 위탁기간 만료(2018.6.30.)로 현 수탁법인인 (사)흥사단과 2년간(2018.7.1.~2020.6.30.)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.

<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>

- 소재지 :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
- 시설규모 : 234㎡
- 주요시설 : 개인·집단 상담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- 위탁 사무 내용
 -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
 - 인터넷중독 상담·치료사업
 - 인터넷중독 예방·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
 -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
 -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·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- 위탁기간: 2년(2018.7.1~2020.6.30.)
- 선정방식 : 재계약(사단법인 흥사단)
- 소요예산 : 604백만원(2018년)

- 광진아이월센터의 경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관련 예방교육, 홍보, 상담,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, 평생교육국은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계약의 사유로 제출하고 있음.

<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위탁추진 경과 >

- 2007.7.1.~2010.7.31. (사)밝은청소년지원센터(3년)
- 2010.8.1.~2013.6.30. (사)흥사단(3년)
- 2013.7.1.~2015.6.30. (사)흥사단(2년)
- 2015.7.1.~2018.6.30. (사)흥사단(3년)

- 본 동의안은 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, 조례¹⁾와 규칙²⁾에 규정된 ‘특수한 지식·기술을 요하는 사무’로 볼 수 있을 것이나, 대부분의 상담은 초단시간 근로자(상담사·강사·치료사 등)가 수행하고 있어, 상담의 책임성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, 이에 대한 보완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80~90%이상의 상담을 처리하는 외래상담원의 수당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으며, 센터장의 겸임,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규직의 법인 내 인사발령(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직업체험센터, 성문화센터 등) 등은 서울시의 민간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바, 재계약의 추진이 적정한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.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2)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 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5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43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8년 3월 2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8년 상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), 2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,
- 다.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및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 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
- 인터넷중독 상담·치료사업
- 인터넷중독 예방·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
-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
-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·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
- 시설규모 : 234m²
- 주요시설 : 개인·집단 상담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2년(2018. 7. 1~2020. 6. 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사단법인 흥사단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604백만원('18년)

○ 산출근거

- 인건비 356백만원, 물건비 46백만원, 경상이전 65백만원,
사업비 137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선지현 (☎2133-4130)

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

□ 민간위탁 개요

○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○ 사업내용 :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

- 소재지 :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
- 시설규모 : 234㎡(1층)
- 주요시설 : 개인·집단 상담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- 주요사업 :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, 인터넷중독 상담·치료사업 등
- '18년예산 : 604백만원

○ 추진경과

- 1차 : 2007. 07. 01.~2010. 07. 31.(3년, (사)밝은청소년지원센터)
- 2차 : 2010. 08. 01.~2013. 06. 30.(3년, (사)홍사단)
- 3차 : 2013. 07. 01.~2015. 06. 30.(2년, (사)홍사단)
- 4차 : 2015. 07. 01.~2018. 06. 30.(3년, (사)홍사단)

□ 성과평가 개요

- 수행기관 :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(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)
- 평가기간 : 2017. 1 ~ 10월
- 대상기관 : 시립청소년시설 53개소
- 평가방법 :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

□ 평가결과

○ 결과요약

(단위 : 점)

| 운영 및 관리 (16) | 청소년 프로그램 (12) | 인사 및 조직 (18) | 시설환경 및 안전 (8) | 대외협력 및 홍보 (11) | 발전 노력 (5) | 특화 사업 운영 (20) | 우수 사례 (10) | 합계 (100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16 | 12 | 16.4 | 8 | 11 | 5 | 20 | 9.5 | 97.9 |

○ 세부내용

(단위 : 점)

| 평가영역 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평가비점 | 평가점수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1. 운영 및 관리 | 1.1. 기관 운영 계획 | 1.1.1.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계획 | 4 | 4 |
| | | 1.1.2. 운영위원회 체계 및 활동 | 4 | 4 |
| | 1.2. 기관운영 및 관리 | 1.2.1. 청소년사업비 집행 비율 | 4 | 4 |
| | | 1.2.2. 컨설팅 및 평가개선사항에 대한 사업추진실적 | 4 | 4 |
| 2. 청소년 프로그램 | 2.1.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| 2.1.1.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| 4 | 4 |
| | | 2.1.2. 프로그램 수행과정 | 4 | 4 |
| | | 2.1.3. 프로그램 평가 | 4 | 4 |
| 3. 청소년 이용 및 참여 | 3.1. 청소년 시설이용 | 3.1.1. 청소년이용률 | - | - |
| | | 3.1.2.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| - | - |
| | 3.2. 청소년참여 활성화 | 3.2.1.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| - | - |
| 4. 인사 및 조직 | 4.1. 청소년지도사 확보 | 4.1.1. 청소년지도사 법적 기준 준수 | - | - |
| | | 4.1.2. 직원확보 수준의 적정성 | - | - |
| | | 4.1.3. 청소년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 수준 | 4 | 4 |
| | 4.2. 직원교육 및 복리후생 | 4.2.1.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 시간 | 5 | 5 |
| | | 4.2.2. 직원 안전 교육 | 4 | 2.4 |
| | | 4.2.3. 직원복리후생제도 운영의 적절성 | 5 | 5 |
| 5. 시설환경 및 안전 | 5.1. 시설환경 및 안전 | 5.1.1. 시설환경의 쾌적성 | 4 | 4 |
| | | 5.1.2. 시설 안전관리의 적절성 | 4 | 4 |
| 6. 대외협력 및 홍보 | 6.1. 대외협력 및 홍보 | 6.1.1. 대외협력 및 연계정도 | 6 | 6 |
| | | 6.1.2.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| 5 | 5 |
| 7. 발전노력 | 7.1. 발전노력 | 7.1.1. 전반적 발전노력 | 5 | 5 |

| 평가영역 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평가비점 | 평가점수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8.특화사업 | | 8.1.1 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| 5 | 5 |
| | | 8.1.2 사례발굴의 노력 | 5 | 5 |
| | | 8.1.3 특화프로그램 | 5 | 5 |
| | | 8.1.4 상담관리 방법의 적정성 | 5 | 5 |
| 우수사례 | | | 10 | 9.5 |
| 총점 | | | 100 | 97.9 |

□ 평가결과보고서

| 평가영역 | 평가결과 |
|----------------|--|
| 1. 운영 및 관리 | ○ 상담서비스 기능강화를 통하여 치료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○ 세대별 서비스를 기획함 |
| 2. 청소년 프로그램 | ○ 단위사업별 시행계획과 운영계획, 평가가 잘 구성되어 있음 |
| 3. 청소년 이용 및 참여 | ○ 자유학기제 연계를 통해 사업을 기획함 |
| 4. 인사 및 조직 | ○ 특이사항 없음 |
| 5. 시설환경 및 안전 | ○ 수련관내에 위치하여 시설이 쾌적함 |
| 6. 대외협력 및 홍보 | ○ 대외협력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음 |
| 7. 발전 노력 | ○ 중장기발전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음 ○ 기관의 성과평가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 있음 |
| 8. 연계 및 지원협력 | ○ 사례발굴과 관련하여 학교 외에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시도하고 사례발굴에 힘쓸 필요 있음 |

□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

- **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재계약 협약 체결**
 - 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'18. 6월말까지 재계약 협약 체결
- **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방안 모색**
 - 성과평가 결과 환류 및 미흡한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
 -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방안 모색 및 실행